

## 있을 法한 이야기

드라마 <사생활>을 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결혼하였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혼인까지 하기에 이르렀을 경우, 혼인이 인정되어 형법 상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될까요? 드라마를 통해 여러가지 쟁점을 살펴어 질문에 답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 드라마 속 사실관계

차주은과 이정환이 결혼을 약속하게 된 사연  
이정환은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처음부터 차주은을 철저히 속이며 차주은과 결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차주은은 이정환의 애정 표현과 매력적인 모습에 호감을 가지고 혼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차주은은 예물과 예단을 자신 계좌로 해결했으며, 이정환을 위해 돈을 빌려 전세비 등 5,000만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장민정은 차주은에게 “저쪽 다 배우다. 전 부다 가짜. 너 사기결혼 당했다.”라고 차주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쟁점

드라마 <사생활>속 결혼의 법적 쟁점을 간단하게 알아보자.

쟁점 (1) 기망행위가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민법 제815조 제1호)

쟁점 (2) 사기죄의 성립요건(형법 제347조, 제352조)

쟁점 (3) 친족상도례 적용여부(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

### 혼인무효사유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 대법원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 사유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혼인신고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에 대하여 관례는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2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 사기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대법원 판결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관례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도록 되어 있으나,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1533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대법원 판례

사기죄를 범하는 사람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혼인이 무효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에 대하여 판례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



### 결론

#### 드라마 <사생활>속 거짓말을 바탕으로 결혼을 한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

기망의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부부로서의 결합을 할 의사나 실체관계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